

건설업 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향

이영섭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1. 서 론

우리 나라의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는 도급 금액 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1993년 11월 20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3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 1994-45호)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는 199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의 34%, 건설업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성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의 현황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의 필요성

우리 나라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업규제 완화의 추진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의 완화 조치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사태에 따른 국내외의 경제, 사회적 여건 악화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추진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공사금액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의 한계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발생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안전의식 및 근로자 보호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안전활동이 부진하다.

(2) 전체 건설업 재해의 34%, 건설업 사망자의 47%를 차지하는 높은 재해율이다.

(3) 노동부 및 공단의 지도점검대상은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현장에 치중해 있으므로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이다.

(4)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본사의 자본력이 부족하여 안전활동 및 안전시설 투자를 기피한다.

(5)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고 유발요인이 높다.

(6) 공정·공사별 무자격 하도급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심각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전담안전관리자의 선임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자본이 부족하여 전문인력고용 및 안전시설에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건설안전전문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간접적인 지도방식인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를 도입하였다.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의 역사(歷史)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제4560호로 1993년 6월 11일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 완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 29일 개정 공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의 개정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관리비의 사용의 제3, 4 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기준과 기관의 지정, 지도감독, 수수료 및 안전관리비 사용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따른 노동부의 관련 고시는 다음과 같다.

1994년 10월 21일 노동부 고시 제94-45호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및 제12조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전담 기술지도와 정기기술지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3조의 수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발주자는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산업안전보건업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며, 제15조의 기술지도에 관한 수수료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6조)을 기초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이 고시는 1995년 3월 1일부터 계약된 공사부터 시행한다. 또한 1995년 2월 23일 노동부고시 제95-5호 건설재

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수건설공사 전문기관, 전기, 통신공사 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제9조 내지 제13조의 지도한계와 기술지도 업무를 규정하였다.

(1) 기술지도의 실시

기술지도는 1993년 11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기술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었고 1995년 1월 5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2)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은 1994년 3월 29일과 1995년 10월 19일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비영리기관만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7년 5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까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정되었다.

(3) 인력·시설 장비

인력·시설 장비의 발전은 1994년 3월 29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89호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두 차례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인력은 건설안전기술사 1인에서 2인으로, 기사 1급 이상 경력자 2인, 기사 2급 이상 2인, 안전관리자 경력자 1인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장비는 가스농도측정기 등 8종에서 6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4) 기술지도 대상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은 1995년 2월 23일에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대상사업장이 4천만원 이상 1백억 원 미만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었으나 점차 그 요건이 완화되면서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6년 10월 22일에 개정된 고시 제96-36호에 의해 그 대상사업장이 3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되었으며 1997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신설되었다.

(5) 기술사 방문

기술사의 방문대상 사업장은 1995년 2월 23일에 개정된 고시 95-6호에 의해 건설안전기술사가 정기기술지도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1회 이상 직접방문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제정되었으나 1996년 10월 22일에 개정된 고시 96-36호에 의거 전문기술지도사업장 공사기간동안 매 3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1997년 12월 23일에 개정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고시 97-42호에 의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매 4회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발전하였다.

(6) 기술지도의 개시

건설현장의 기술지도의 개시는 1995년 2월 23일에 제정된 노동부 고시 제95-5호에 의하여 전담기술지도는 공사착공 후 1월 이내, 정기기술지도는 공사착공 후 2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제정되었다가 1997년 11월 21일 노동부고시 제97-30호에 의거 폐지되었다.

(7) 기술지도의 계약

기술지도의 계약은 1994년 10월 21일에 제정된 고시 제94-45호에 의거 공사계약체결 후 14

일 이내 실시하고 자기공사자의 경우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토록 한 것을 노동부고시 96-36호에 의거 모든 공사의 기술지도는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하도록 발전하였다.

(8) 기술지도 구분

기술지도의 구분은 1994년 10월 21일에 제정된 노동부 고시 제94-45호에 의해 전담 및 정기 기술지도를 받도록 제정되었으나 기술지도구분의 법적 제한을 1997년 12월 23일에 제정된 노동부 고시에 의해 그 내용을 삭제해 버렸다.

(9) 지도한계

기술지도의 한계는 그 내용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으며 1995년 2월 23일에 제정된 노동부 고시 95-5호에 의해 규정을 정하였으며 그 후에 1997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 시행규칙 영 제119호에 의해 사업장 지도한계설정에 관하여 총공사 금액이 5억원 미만은 사업장 2개소를 1개소로 정한 규정을 3억원 미만의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 3억이상 40억원 미만의 사업장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10) 방문횟수 및 수수료

방문횟수 및 수수료의 발전은 1994년 10월 21일에 노동부 고시 제94-45호에 의해 제정이 되었고 수수료의 현실화로 그 이후 3차례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11) 지도분야

지도분야는 1994년 10월 21일 노동부 고시 제94-45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7년 10월 16일 노동부령 제119호에 의해 마지막 개정으로 건설공사,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로 확정되었다.

(12) 기술지도범위 및 준수의무

건설공사 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의무는 1994년 10월 21일 노동부 고시 94-45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2회 이상 미이행시는 노동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1997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산안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119호에 의해 2회 이상 미이행 시뿐만 아니라 추락, 붕괴 등의 중대위험이 발견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3) 결과의 기록 및 서류의 보존

결과의 기록 및 보존은 1995년 2월 23일 고시 제95-5호에 의하여 2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토록 제정되었으며 이 고시는 1997년 11월 21일 고시 제97-30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노동부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119호(1997. 10. 16)에 의하여 결과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개정되었다.

(14)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기술지도계약의 미체결시의 변화는 1994년 10월 21일에 제정된 노동부 고시에 의해 전담기술지도는 안전관리비의 40%, 정기기술지도는 안전관리비의 30%를 발주처에게 지급하도록 제정되었고 그 이후 2회의 결친 개정을 통하여 1997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119호에 의해 안전관리비의 20%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도록 재개정되었다.

(15) 지정신청

1995년 2월 23일에 제정된 고시 95-5호의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았지만, 1997년 10월 16일 노동부령 제119호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 조의 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경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 노동청의 관할 구역과 인접한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추가지정을 받아 기술지도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 기술지도 수수료 정산항목

기술지도 수수료 정산항목은 1994년 10월 21일에 고시 제94-45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가졌다.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적

(1) 전문지도기관 현황

현재 설립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현황은 지정기관인 비영리법인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4개 사로 그 동안 건설재해 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건설업의 확장 및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기술지도의 서비스향상과 기술지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97년부터 기관의 문호가 개방되어 영리법인의 설립이 인가됨으로써 현재 12개의 영리법인이 추가로 설립하여 총 16개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되었다.

(2) '95, '96 공사물량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물량의 변화추이는 총 건설물량이 1995년도에는 46,653건이고 1996년에는 47,915건이었다. 그 중 건설재해예방지도를 받아야하는 대상사업장은 1995년에는

4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총 36,962건이 있고 그 중 5,023건의 건설공사가 재해예방지도를 받아 13.58%로 나타났으며, 1996년에는 39,610건이 재해예방지도 대상사업이었고 그 중 12,602건의 사업장이 재해예방지도를 받아 약 27%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6년 11월 22일에 재해예방지도대상사업장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3억 이상의 건설공사로 법규가 변경되어 1997년에는 그 대상사업장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영리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지도율이 1997년 이전에 비하여 점차 향상될 것으로 보아진다.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실적

('95, '96, '97)

산업안전협회와 건설안전기술협회의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재해예방지도실적은 1995년에 5,022건에서 1996년에는 12,60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1997년에는 그 물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상사업장의 수가 4천만원 이상에서 3억 이상의 건설사업장으로 상향조정됨으로 인하여 물량이 줄었다고 보아진다.

(4)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계약(민/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계약건수는 건설업의 물량이 관공사에 비해 민간공사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공사가 민간공사의 기술지도에 비해 훨씬 많은 지도를 받았다. 현재 기술지도를 받은 관공사와 민간공사의 노동부 지방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은 현장수가 1,409건으로 총 기술지도를 받은 현장수의 약 19.22%를 차지하였으나 관공사는 5,923건으로 80.78%나 되었다.

(5) 기술지도 투입시기

현행 법적으로 건설공사에서의 기술지도 투입 시기는 법적으로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평균 기술지도기간에 비하여 평균 공사기간이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공사업체가 법적 기술지도기준인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를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기술지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완공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지도를 받으면 방문횟수에 의하여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비용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도횟수 또한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 지도횟수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도한 횟수가 적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문제점 및 고찰

전문지도기관이 과거 비영리법인 4개에서 영리법인 12개가 추가되어 총 16개소가 되어 최근 경제 위기에 의한 건설현장의 감소로 서로 과잉 경쟁을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덤픽까지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기술지도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많은 기관을 허가해 주었으나 영리법인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지도를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담당하기가 어려워 기술적인 면에서 질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현장이 1995년에는 4,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인데 13.6%만이, 1996년에는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인데 27%만이 기술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실적은 대상이 4,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중대재해 등이 많이 발생되는 현장이 소규모 건설 현장이므로 앞으로 4,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은 현장은 관공사는 80.8%인 반면, 민간공사는 19.2%로 나타났는데 민간공사의 경우 강제적으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앞으로 영리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술지도를 행할 경우 실적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지도가 시작되는 시기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지도횟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지도횟수보다 최고 60%까지 적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적으로 보완 또는 흥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안전실태 설문자료 분석

1) 조사절차 및 방법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에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100억 미만인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현장소장 및 안전관계자와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는 기술지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직원의 기술지도효과 및 기술지도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현장관계자가 보는 동 제도의 효과성, 안전에 관한 투자, 동 제도의 개선방향을 위한 설문내용을 작성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직원에 대한 설문자료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1) 현장안전실태는 47.9%가 불량, 38.5%가 미흡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불량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79.2%가 안전시설이라고 나타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미비한 것을 나타냈다.

(2)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 여부는 절반정도 시정이 59%, 거의 시정 안함이 33.3%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강제성 부족이 67.7%, 안전비용 부족이 30.2%로 나타났는데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3) 기술지도제도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69.8%였고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가 28.1%로 나타났는데 이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력한 법규제가 필요한 것이 51.0%, 발주처에서 시공관리가 28.1%, 안전관리비 용도개선이 19.8%로 나타났다.

(4) 기술지도 실시 후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81.3%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72.9%로 나타남. 지적사항을 2회 이상 미이행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가 81.3%로 나타나 지적사항 미이행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재해예방 전문지도대상 적용 현장의 설문자료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1) 안전전담지원부서로는 공사금액이 낮을수록(40억 미만) 총무부에서 지원관리하고 공사금액이 높을수록(40억 이상) 안전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회사의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전문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관리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이유로는 공사금액이 낮을수록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나타났고 공사금액이 높을수록 전문인력부

족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의 미비가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3) 안전관리비 지원상태로는 공사금액이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나타났고 공사금액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소규모회사의 안전관리비 위탁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적사항 개선여부로는 전혀 개선하지 않다가 45.2%, 절반정도 개선한다가 42.4%로 나타났고 기술지도시 행정규제의 필요성의 여부로 66.3%를 차지해 직원용 설문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적절한 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5) 기술지도 필요성에 대한 여부는 꼭 필요하다가 23.7%, 필요하다가 64.5% 차지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전문지도기관 영리확대 시행여부는 찬성한다가 42.8%, 반대한다가 33.9%로 나타났고 찬성의 이유로는 기술서비스향상이 41.7%, 기술지도확대가 39.1%로 나타났고 반대의 이유로는 기술지도 난립이 46.2%, 경쟁과열이 25.8%로 나타나 기술지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서로 상충되었다.

4. 결 론

1) 문제점

본 연구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법규가 여러 번 개정되면서 전문지도기관이 16개의 법인으로 늘었는데 서로 과잉 경쟁을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덤핑까지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술지도의 기술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

상 현장이 1995년에는 4,000만원 이상인데 13.6%만이, 1996년에는 3억원 이상인데 27%만이 기술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공사는 80.8%인 반면, 민간공사는 19.2%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3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은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지도 횟수보다 최고 60%까지 적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완공 직전에 받으면 수수료는 방문횟수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현장으로서는 이익이 된다.

(4) 기술지도 대상 건설현장의 안전실태는 불량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 투자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기관의 과잉 경쟁으로 인하여 수주에만 관심이 많아 다음에 그 일을 더 하기 위하여 기술지도 시 권장사항과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횟수는 공사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사 성격상 공정율이 많이 진척되어 있거나 공기가 짧은 경우 매월 4~5회 방문해야 하고 공기가 짧은 경우에는 4~5개월에 1회 방문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기술지도의 횟수의 과다 또는 과소에 따른 기술지도가 형식에 호를 수 있다.

2) 대책

기술지도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법규가 개정되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6개의 전문지도기관(영리·비영리 법인)으로 늘었는데 지금에 와서 설립 취소 등은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통합 운영하여 시설과 인력에 맞도록 지역 할당제 등을 도입하여 각 기관이 계약수주 등 사업적인 면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지도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지도 요원에게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기술지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술지도 수수료 인하로 인한 문제점은 지도기관의 도산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현장 중 관공사의 경우 받지 않는 현장에 대하여 법적 제재조치를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시행을 해야 할 것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허가서류에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을 하도록 각서를 허가관청에서 제출토록 하고 준공 시에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첨부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3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수수료를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은 공사 착공 후 14일 이전에 필히 하도록 법령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사중지 또는 무거운 벌금 부과 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

(4) 기술지도 대상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하며, 미흡한 것이 안전시설로 나타났는데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안전관리비만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안전시설 확보에만 사용하도록 기술지도 시에 철저한 감독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현장 기술지도 시 권장사항과 지적사

항이 제대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업성이 배제되도록 해야 하며, 지도요원에게도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6) 기술지도횟수는 기술지도요원의 경험에 의하면 공사금액별로 하는 것보다는 매월 1회 방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1]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중대 재해사례와 대책”, 1995. 3, P7~10
- [2]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중대 재해사례와 대책”, 1996. 1, P5~10
- [3]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중대 재해사례와 대책”, 1996. 11, P8
- [4]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중대 재해사례와 대책”, 1997. 2, P5~19
- [5]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중대 재해사례와 대책”, 1999. 2, P5~17
- [6] 총리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개선방안”, 1995. 12, P286
- [7] 안전보건, “97년도 하반기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추진결과 분석”, vol. 10, 1998, P86~89
- [8]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1996. 10. 30, P118~121
- [9]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1997. 11. 30, P112~115
- [10] 노동부, “92~96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 [11]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 [12]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제8회 건설안전세미나”, 1997. 7. 9, P3~31
- [13]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97 산재예방평가 및 98 산업안전정책방향”, vol. 26, 1997, P17~23